

보건복지부 시정요구

제 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촉구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 등 6개 시·군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15명이 재판정 기한을 평균 453일이 경과하도록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 (2016.8.31.)까지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장애 등급 재판정 미이행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 삼척시장, 횡성군수, 평창군수, 철원군수, 양구군수는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 독려, 장애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